1. 전문경력직(토지보상_4급 상당) 직무설명서

채용분야	토지보상	**분류체계**	대분류	10. 영업판매
임용부서	보상사업 부서		중분류	02. 부동산
채용직위	4급 상당		소분류	03. 부동산중개, 04. 감정평가
주요사업	ㅇ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및 공간정보·지적제도에 관한 사업 - 연구, 기술개발, 표준화, 교육사업, 기술 도입, 국제 교류협력 및 국외 진출사업 ㅇ 「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적측량사업 ㅇ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ㅇ 개별법률에 지정·위탁되어 추진하는 사업 등(예 : 보상전문기관,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)			
직무수행 내용	ㅇ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정한 보상업무 실무 및 현장업무 수행, 제도개선 등 ㅇ 토지 및 물건 조사, 보상금 산정 지원, 협의 업무 수행 ㅇ 보상 대상자 협의 및 계약 체결 ㅇ 민원 대응 및 현장 갈등 관리 ㅇ 보상업무 관련 자료 작성·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(내부·국토부 등 외부) ㅇ 보상업무 팀원 지도 및 실무 수행·지원 등			
일반요건	ㅇ 공사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성별, 나이 제한 없음. 단, 공사 정년(만 60세) 이상자 제외 ㅇ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(남성)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			
필수요건	ㅇ 다음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-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-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-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- 7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			
필요지식	ㅇ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보상관련 법령(국토계획법, 하천법, 민법 국유재산법, 농지법 등) 전반에 관한 지식 ㅇ 토지·물건조사, 보상대상물 결정, 보상금산정, 협의, 민원업무, 재결업무, 소송 등을 위한 전반적인 지식			
필요기술	ㅇ 관련 법 해석 및 제도 활용 기술, 공문서 작성 기술 등 ㅇ 현장조사 수행 능력 ㅇ 문서 작성 및 행정 처리 능력 ㅇ 고객 응대 및 의사소통 능력 ㅇ 공간정보 활용 능력			
직무수행 태도	ㅇ 소송업무 자료에 대한 판단력, 책임감 및 논리적 분석 태도 ㅇ 적극적인 협업 태도, 원활한 의사소통 자세 ㅇ 법률 및 관련 규정 준수 태도 ㅇ 상기 제시된 담당직무 및 필요지식을 위한 직·간접적 관련 태도			
필요자격	ㅇ 해당사항 없음			
직업기초 능력	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정보능력, 조직이해능력, 직업윤리, 대인관계능력			
참고사이트	국가직무능력표준(www.ncs.go.kr), LX(www.lx.or.kr)			

2. 전문경력직(토지보상_5급 상당) 직무설명서

채용분야	토지보상	분류체계	대분류	10. 영업판매
임용부서	보상사업 부서		중분류	02. 부동산
채용직위	5급 상당		소분류	03. 부동산중개, 04. 감정평가
주요사업	ㅇ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및 공간정보·지적제도에 관한 사업 - 연구, 기술개발, 표준화, 교육사업, 기술 도입, 국제 교류협력 및 국외 진출사업 ㅇ「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적측량사업 ㅇ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ㅇ 개별법률에 지정·위탁되어 추진하는 사업 등(예 : 보상전문기관,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)			
직무수행 내용	ㅇ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정한 보상업무 실무 및 현장업무 수행 등 ㅇ 토지 및 물건 조사, 보상금 산정 지원, 협의 업무 수행 ㅇ 보상 대상자 협의 및 계약 체결 지원 ㅇ 민원 대응 및 현장 갈등 관리 ㅇ 보상업무 관련 자료 작성·관리 및 시스템 입력·데이터 관리 ㅇ 보상업무전반 실무 수행·지원에 관한 사항 등			
일반요건	ㅇ 공사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성별, 나이 제한 없음. 단, 공사 정년(만 60세) 이상자 제외 ㅇ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(남성)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			
필수요건	ㅇ 다음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-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-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-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			
필요지식	ㅇ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보상관련 법령(국토계획법, 하천법, 민법 국유재산법, 농지법 등) 전반에 관한 지식 ㅇ 토지·물건조사, 보상대상물 결정, 보상금산정, 협의, 민원업무, 재결업무, 소송 등을 위한 전반적인 지식			
필요기술	ㅇ 관련 법 해석 및 제도 활용 기술, 공문서 작성 기술 등 ㅇ 현장조사 수행 능력 ㅇ 문서 작성 및 행정 처리 능력 ㅇ 고객 응대 및 의사소통 능력 ㅇ 공간정보 활용 능력			
직무수행 태도	ㅇ 소송업무 자료에 대한 판단력, 책임감 및 논리적 분석 태도 ㅇ 적극적인 협업 태도, 원활한 의사소통 자세 ㅇ 법률 및 관련 규정 준수 태도 ㅇ 상기 제시된 담당직무 및 필요지식을 위한 직·간접적 관련 태도			
필요자격	ㅇ 해당사항 없음			
직업기초 능력	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정보능력, 조직이해능력, 직업윤리, 대인관계능력			
참고사이트	국가직무능력표준(www.ncs.go.kr), LX(www.lx.or.kr)			